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5933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59334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1 선고 2020가소3213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환

변론종결 2022. 4. 21.

판결선고 2022. 5. 12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6. 1. 선고 2020가소3213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85,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12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(이하 ‘이 사건 음식점’이라 한다)을 운영하는 자로서, 2019. 1. 12.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로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1. 근로개시일 : 2019년 1월 12일부터
2. 근무장소 : C
3. 업무의 내용 : 주방보조
4. 소정근로시간 : 12시부터 21시까지(휴게시간 : 15시 ~ 18시)
5. 근무일/휴일 : 매주 2일 근무
6. 임금
 - 월(일, 시간)급 : 8,000 -> 8,350원 *주휴수당 포함*
 - 임금지급일 : 매월 10일

나. 피고는 2019. 1. 12.부터 2019. 4. 28.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명목으로 2019. 2. 13. 376,000원, 2019. 3. 11. 432,000원, 2019. 4. 10. 326,000원, 2019. 5. 10. 668,000원 합계 1,802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2019. 1. 12.부터 2019. 4. 28.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, 원고는 착오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보다 585,100원을 초과한 금액인 1,802,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85,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원고가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85,100원은 피고가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,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.

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민법 제741조는 “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2019. 1. 12.부터 2019. 4. 28.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,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명목으로 합계 1,802,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시간 외의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음식점에 올 경우에는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

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, ② 원고 역시 드물긴 하지만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게 되어 직원 등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한 점, ③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네 달간 피고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휴게시간에도 일한 것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, ④ 원고가 제출한 근무시간기록표(갑 제2, 4, 6호증)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근무시간기록표에는 휴게시간에 손님을 응대하거나 일을 하게 된 경우 이를 기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근무시간기록표만으로는 피고의 근무시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중 585,100원이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상호, 판사 송인경, 판사 김진만